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26. 한정애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8. 27.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2025.11.26.)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한정애의원)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함.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음.

부모가 수용될 경우 남겨진 아동들이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심각함. 2021년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가 추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20.8%였으며, 이 중 80명은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됨. 보건복지부 또한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부터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으로 ‘부모교정시설입소’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2020년 166명, 2021년 99명, 2022년 110명 등 수용자자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였고, 2019년 10월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9월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음.

최근에는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과 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나.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1조).

다.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인 수용자는 아동이 36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

조 및 제53조).

라.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53조의2).

마.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의3 신설).

바.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함
(안 제53조의4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 개정안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협의체에 수용자 자녀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 부처를 구체화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 체계상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항은 제2편 ‘수용자의 처우’ 내 제7장(특별한 보호)의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53조의3이 규정한 ‘수용자 자녀의 처우’에 관한 사항도 ‘수용자 처우’라는 포괄적 교정 정책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 관련 부처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간 실질적인 협의와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 있음.
- ☐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접견은 반드시 접촉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접견은 접촉차단 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가족관계 회복 기회 부여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여성수용자가 수용기간 중 출산한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유아양육기간을 생후 3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수용자 자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¹⁾는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형사소송법」 제471조²⁾ 등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용자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해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안 제53조제1항에 따라 모의 유아 양육 허가기간을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도록 할 경우, 유아의 지적능력 발달과정 상 18개월 이후 시설 내 생활은 오히려 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³⁾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소장이 신입자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수용자와 자녀간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수용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3) 권수진 외,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19

일반적으로 신생아기(0-1세) 시기는 감각과 운동 능력을 발전시키며, 기본적인 애착 형성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고, 유아기(1-3세) 시기는 언어 발달과 자아 인식이 시작되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시기이며, 유치원기(3-6세) 시기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규칙과 역할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임.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